

2023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

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

2023년도 정기 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23. 12. 27(수) 11:00

2. 장 소 : 재단 3층 강당

3. 출석상황

재 적 임 원			출 석 임 원		
계	이 사	감 사	계	이 사	감 사
13	11	2	9	9	-

4. 안 건 명

- (제1호)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- (제2호)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해산 결의안
- (제3호) 청산인 선임안
- (제4호)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안

5. 의결결과 : 원안가결(심의 · 의결서 붙임)

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
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

의안 번호	1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27
제출자 : 대표이사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재단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부의근거 : 재단 정관 제17조 및 제19조

4. 주요내용

- 예산총액 : 10,819,866천원(기정예산 대비 증 69,838천원, 0.6%)
-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과 목	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(A-B)	
			금액	증감율
계	10,819,866	10,750,028	69,838	0.6%
영업수익	10,106,638	10,041,985	64,653	0.6%
영업외수익	58,320	54,635	3,685	6.7%
유보자금	654,908	653,408	1,500	0.2%

○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기 관 별	예산액 (A)	기정예산액 (B)	증 감 (A-B)	
			금 액	증감율
합계	10,819,866	10,750,028	69,838	0.6%
재단사무처	643,950	643,950	0	0%
청소년수련원	3,419,000	3,363,000	56,000	1.6%
청소년상담복지센터	3,079,200	3,079,200	0	0%
청소년활동진흥센터	1,187,020	1,191,150	△4,130	△0.3%
청소년성문화센터	292,973	282,273	10,700	3.7%
아동청소년쉼터	1,004,825	997,557	7,268	0.7%
청소년남자쉼터	516,386	516,386	0	0%
북부성문화센터	676,512	676,512	0	0%

5.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: 붙임

6. 관계기관 협의 : 경상북도(여성아동정책관) 협의 필

< 붙 임 >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부

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해산 결의안

의안 번호	2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27

제 출 자 : 대표이사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해산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경상북도 민선8기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의거하여 2024. 1. 1.부터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과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이 통합됨에 따라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해산하고 해산효력발생일은 2023.12.28.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함.
 - 「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 시행(2024. 1. 1.)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4조(출자·출연기관의 해산 요청 등)

3. 주요내용

- 해산사유 :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과 통합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목적사업을 경북행복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을 해산하고 해산일은 2023.12.28.일로 하고자 함. <민법 제77조, 정관 제34조의2>
- 잔여재산 :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 귀속 <정관 제34조>
- 해산방법 : 이사회 결의 <정관 제34조>
- 결의방법 :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 의결 <정관 제34조>

※ 청산 절차 : ① 법인 해산등기 및 신고 → ② (현존)사무의 종결 → ③ 채권 신고 공고 → ④ 채무의 변제 → ⑤ 잔여재산의 인도 → ⑥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

4. 관련근거

<p>민법 제77조 (해산사유)</p>	<p>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,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<u>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</u>,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.</p>
<p>정관 제34조 (법인의 해산)</p>	<p>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<u>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<u>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에 귀속한다.</u></p>
<p>정관 제34조2 (해산사유)</p>	<p>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, 목적의 달성, 목적의 달성 불가능, 파산, 설립허가의 취소 또는 <u>경상북도의 요청으로 해산한다.</u></p>

5. 관계기관 협의 : 경상북도(여성아동정책관) 협의 필

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산인 선임안

의안 번호	3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27

제 출 자 : 대표이사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산을 위한 청산인 선임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의안번호 제2호 의결 건 『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해산 결의』에 따라 재단법인 청산 절차를 추진하기 위한 청산인 1명을 선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민법 제82조(청산인)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청산을 위한 청산인을 선임하고자 함.

- 선임대상

성명	생년월일	청산인 임기	주요약력
○○○	. . .	2023.12.28. (법인 해산 기준일) ~ 청산 종결시 (청산종결 등기신고일)	

- 관련근거

민법 제82조 (청산인)	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.
민법 제87조 (청산인의 직무)	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1. <u>현존사무의 종결</u> 2. <u>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</u> 3. <u>잔여재산의 인도</u>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
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안

의안 번호	4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23. 12. 27

제 출 자 : 대표이사

1. 의결주문

-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『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』 부칙 제3조(재단법인 경상북도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경과조치)에 따른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경북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

부칙 제3조(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경과조치)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이 이를 포괄승계하며, 그 재산과 권리·의무에 관한登記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명의로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의 명의로 본다.

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명의로 행한 행위,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며,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임·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경북행복재단의 임·직원으로 본다.

3. 주요내용

- 계약대상자 : 양도인(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),
양수인(재단법인 경북행복재단)
- 양수도대상 : 양도인의 모든 영업 및 그와 관련된 유·무형 자산(채권·지적재산권 포함)·부채·계약상 지위 및 고용승계동의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 등 일체의 인적·물적 조직으로서의 영업을 포괄
- 양수도 대금 : 양도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자산 가치 및 향후 손익 가치에 대한 회계 결산내역에 따라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거쳐 사후 정산

○ 거래기준일 : 2024년 1월 1일

○ 기타사항

- 양도인은 채권양도통지 등 채권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
- 양도인의 고용관계 및 근로자에 대하여 양도인이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함

4. 붙임서류

가. 영업양수도계약서안 **【붙임1】**

(1-1 재단법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 명단, 1-2 고용승계확약서)

나. 청산 사무처리 비용에 관한 부속 합의서안 **【붙임2】**

다. 2023년 세부사업 및 예산 이관내역(2023.11.30.기준) **【붙임3】**

라. 유무형자산 목록(2023.11.30.기준) **【붙임4】**

마. 2023년 계약현황(2023.12.31.기준) **【붙임5】**